

# 제8주 농산물협정





# 농산물 협정

- - 📌 1. 농업협정의 의의

- - 📌 농산물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에 의한 규제와 수입장벽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GATT체제 밖에 있었으며, GATT규정의 폭넓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세계무역질서의 왜곡을 가져왔음

- - 📌 이러한 왜곡에 대한 개선 필요성 증대에 따라 UR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짐





## 농산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의 발생 과정

1970년대 세계 농산물 시장상황은 개도국, 소련 및 동구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, 세계적 흉작으로 따른 공급부족, 향수 비관적인 식량 수급전망 등으로 73-74년에 곡물파동발생(식량위기 위협 우려감 고조)

세계 각국은 국내농업보호 정책 추진

1980년대 초 인도, 중국 등 대부분 개도국에서 식량자급 달성, EC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(공급과잉 현상 초래)

과도한 재고보유, 생산자 가격지지를 위한 수출보조금의 경쟁적 지급-교역질서 왜곡, 수출국의 재정적자 급증

수출국 사이의 보조금 감축, 수입국의 수입장벽 완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 필요성 대두



# 농업협정의 내용

- - 📌 1. 시장접근
  - 📌 2. 국내보조
  - 📌 3. 수출보조
  - 📌 4. 개도국 우대조치
- 
-



# 1. 시장 접근

## 가. 예외 없는 관세화(Tariffication)

- 농업협정은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본 원칙으로 함
- ▶ 수입수량규제, 가변수입부과금, 최소수입가격, 자의적 수입허가증 발급, 국영무역 등의 비관세조치, 수출자율 규제 등의 유지 또는 재원용 금지

▶ 다만 국제수지 방어,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지원, 특정수입품에 대한 비상조치, 일반적 예외, 안보목적 등 GATT의 예외조항은 관세화에서 제외

## 나. 관세화의 유예

- ▶ 당장 관세화하기 어려운 특정 농산물은 일정기간(선진국은 2001년까지, 개도국은 2005년까지) 관세화를 유예



## 다. 관세인하

국별이행계획서에 의거해 단계별로 관세를 인하

## 라. 최소시장접근

수입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86-88년 기준 국내소비량의 3% 이상을 최소시장접근으로 보장하되 이행기간 중 이를 5%까지 확대함

## 마.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

관세화의 보완장치, 관세로 전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됨, 수입량 급증 또는 수입가격 급락의 경우에는 추가적 관세부과가 허용됨



## 2. 국내보조(Domestic support)

- 86-88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국내보조 수준을 95-00년 기간 동안 20%(개도국은 10년간 13.3%) 감축
  - - 국내보조수준이란 : 협정에 따른 허용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농업보조측정총액(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, total AMS)
  - 다만, ① 해당년도 특정품목 총생산액의 5%(최소허용보조비율)을 초과하지 않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 ② 농업 총생산액의 5%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불특정 국내보조는 AMS 계산에서 제외됨



## ↳ 허용대상 국내보조의 일반적 기준

↳ ① 해당보조가 소비자 부담이 아닌 정부재정지출일 것

↳ ②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을 것

## ↳ 허용대상 정책(예시)

↳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: 연구사업, 병충해 예방, 교육훈련 및 지도, 판매촉진, SOC개선,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보유, 영세민 식량보조

↳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: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,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보장, 재해구호, 탈농보상, 휴경보상,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, 환경보전, 지역개발지원

## ↳ 개도국 우대

↳ 최소허용보조비율 10%, 일반적 투자보조, 저소득층 및 자원빈약생산자를 위한 농업 투입재 보조, 마약작물로부터 타작목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보조는 감축 약속에서 면제됨



### 3. 수출보조

- 수출보조의 경우는 88-90년 기준으로 1995년부터 6년 동안 재정 지출액기준으로 36%, 수출보조대상 물량기준으로 21%를 감축, 개도국 10년동안 각각 24%, 14% 감축

- ↳ 감축대상 수출보조

- ↳ ①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

- ↳ ②수출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용의 재고 저가판매, 처분

- ↳ ③정부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보조

- ↳ ④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지원

- ↳ ⑤수출농산물에 대한 국내운송비 지원

- ↳ ⑥수출물품의 원료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

- ↳ 다만 개도국의 경우 ④ ⑤의 감축의무 완화



## 📌 기타 사항

● 📌 수출신용, 수출신용보증, 수출보험은 이를 규율하는 국제규범 따라서만 제공되어야 함

## 📌 국제식량원조도

📌 ①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연계되어서는 안됨

📌 ② FAO의 잉여농산물 처분원칙과 협의의무를 준수 할 것

● 📌 ③ 최대한 양도의 형태로 제공되고 86년 식량원조협약에 명시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것

●



## 4. 개도국 우대조치

- ① 선진국보다 낮은 감축율, 긴 이행기간 허용 등 이를 총 정리하면,
  - ① 관세인하율, 국내 및 수출보조 감축율은 선진국의 2/3수준까지
  - ② 이행기간은 선진국의 6년보다 긴 10년
  - ③ 최소허용 보조수준(국내보조)도 선진국의 5%보다 높은 10%까지 인정
  - ④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보조, 마약작물로부터 타작목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생산자 보조, 저소득층 및 자원빈약생산자를 위한 농업투입재 보조는 국내보조 감축의무 면제
  - ⑤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과 국내운송비 지원에 대한 감축의무 면제
  - ⑥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모든 감축의무 면제



# DDA란 무엇인가?

- - 📌 만화로 대체함



## 섬유 및 의류 교역의 의의

- 1. 다자간 섬유협정(MFA)와 섬유협상
- MFA 하에서 대부분의 섬유 및 의류제품의 교역이 규제되어오던 관행이 UR협상의 결과로 GATT에 일치하도록 보호무역적 조치의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음
- MFA는 GATT에서 인정한 예외조치로서 양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수량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주요 섬유 수입 선진국과 섬유수출 개도국 사이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임
- 섬유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라는 MFA의 목적에도 불구하고, 선진국들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의 범위와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었음
- UR타결로 GATT로 편입되었음에도 또 다른 형태의 규제조치 등장가능성에 대한 우려성 제기됨



## 섬유교역 규제의 배경

- 섬유산업은 현 선진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사양화되어 갔음
- 20세기 들어 일본과 개도국들이 섬유산업을 주종산업으로 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섬유시장 경쟁이 심화됨
-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후발개도국의 등장으로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초래
- 선진국의 심각한 고용상실 문제 야기,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정치적 부담
- 80년대 전후 기술개발과 자동화로 자본집약적 성격으로 바뀜, 선진국의 절대적 수요 증가,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부가가치화 - 선진국의 보호, 육성 당위성 부각



## 2. 섬유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

- (1) 수량규제의 일반적 효과
  - 📌 수출량 증가 제약, 수입국 가격 상승
  - 📌 수출기업의 품질제고-고부가가치화로 총량수출가의 증가를 도모하므로
  - 📌 후발 개도국의 성장에 부정적 효과 가져옴-일본과 신흥공업국은 섬유산업에 기초하여 급속한 경제성장 가능  
● 그러나 후발개도국은 섬유쿼터에 크게 제약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됨
  - 📌 수출제약은 물론 외국인투자 유입을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 동반
-



## 📌 (2) 쿼터관리 방식의 효과

- 📌 수출국내 수출권의 분배절차에 따라 수량규제 그 자체에다 경제적 추가비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, 대체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으로 분배하는 2단계 분배장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쿼터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
- 📌 우리나라는 기본쿼터와 개방쿼터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2단계 배분 방식 채택, 기본쿼터는 수출실적 위주 기득권 보장, 개방쿼터는 정책목표 즉 중소기업의 신규수출참여, 시장의 다변화, 고품질제품의 수출 유도의 방향으로 배정됨
- 📌 2단계 방식은 기득권 보호에 중점이 있어 기존 업자의 현실안주를 초래 산업경쟁력 약화 유발 효과 가능성 있음
- 📌 개방쿼터의 운영으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출다변화와 수출품의 고급화 촉진 가능



## 1, 섬유류 교역의 GATT 복귀 방법

### (1) 현행 규제의 통보

-  WTO 발효 이전에 MFA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수량규제조치는 섬유교역감시기구(TBM)에 통보되어야 함-기존의 모든 수입규제조치는 본 협정에 의해 통제될 것임

 통보된 규제조치에 한하여 WTO협정 발효 이전의 조치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규제는 모두 철폐되며 새로운 조치도 도입할 수 없음

### (2) 복구시한

 GATT에 완전 복구시기(수량제한 철폐)는 2005년 1월 1일임

-  05.1부터 섬유쿼터 철폐로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섬유산업 급속 성장, EU 등 선진국 08년 초부터 섬유쿼터 재발 동 가능성 조짐, 실패할 경우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우려